

[붙임 1]

경기도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사업 공고

□ 개 요

- 사업명 : 경기도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사업
- 주요내용 : 24시간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정신응급진료
- 사업기간 : 04월 ~ 12월
- 신청대상 : 정신건강복지법(제19조)에 따라 설치·운영, 도내 민간정신의료기관
 - ※ 단, 3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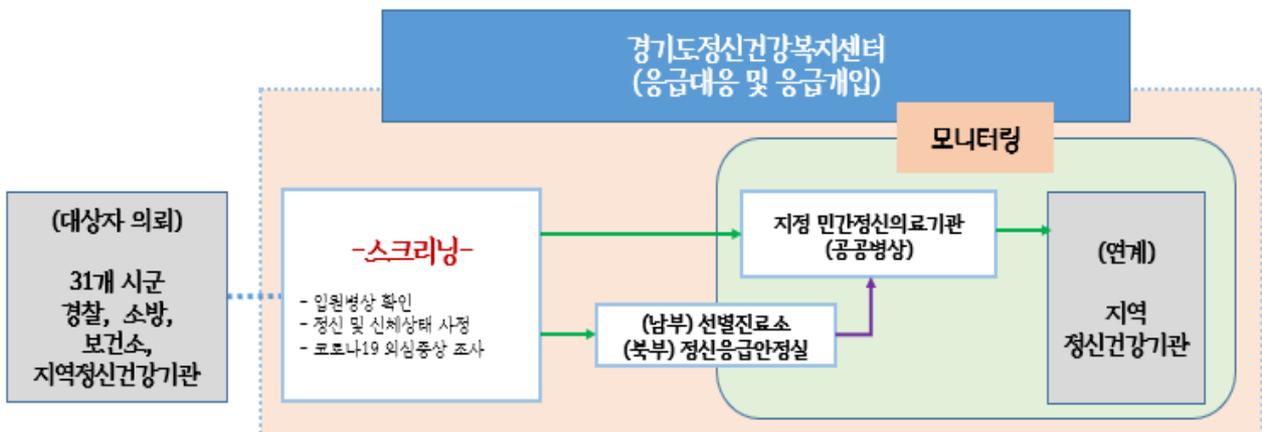
□ 내 용

- 사업량 : 1병상(도 내 정신의료기관)
- 사업목적 : 24시간 입원가능 정신응급환자 공공병상 확보 및 운영
- 사업내용
 - 민간정신의료기관 24시간 입원가능 안정실 확보, 회전을 관리
 - 자타해 위험 고위험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정신응급진료
 -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 치료서비스 제공
 -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
- 지원사항 : 손실병실사용료 지원(병실료 x 1일 약194천원 x 30일 x 9개월)
 - * 보조금 지원 및 정산 _매달 보조금 지급 및 사업실적 제출
- 지원조건
 - 1)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대응·응급개입팀 의뢰 대상자 입원조치
(야간 및 주말·공휴일 당직의 확보 필수)
 - 2) 도 정신질환자 관련사업 및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협력

□ 사업추진체계

주 체	내 용
경기도	- 계획수립, 공모 및 선정, 예산교부, 사업전반 관리 등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	- 1577-019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운영 - 정신과적 응급환자 스크리닝(초기선별) -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관리운영 및 예산지원 - 응급대응 및 응급개입팀 운영 : 정신응급 및 자살위기대응 관련 지원 - 응급서비스 제공 및 지역 연계, 사후모니터링
지정 민간정신의료기관 (정신응급 공공병상)	-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 및 정신응급진료 - 안정실 회전을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-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
경찰, 소방구급	-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대상자 신변확보 - 현장출동 및 긴급구조 - 자살시도자 및 정신과적 응급대상자 구조·구급 - 정신건강복지법 따른 구호대상자 응급입원, 이송 지원
31개 시군 보건소, 지역정신건강기관	- 행정입원 및 치료비지원(응급입원비, 행정입원비 등1) - 등록 및 사례관리

<공공병상 운영 체계도>



1) 『보건복지부』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안내(2021), 『경기도』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안내(2021)

□ 선정방법

1) 전문가, 학계 등으로 「선정심의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비대면 서면평가

2) 심사 및 기준

-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선정,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

- 심사 후 선정기준 미달 등으로 최종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3) 심사 및 기준

① 사업수행 능력(30점)

② 전문성(30점)

③ 운영계획의 적절성(20점)

④ 사업 협력체계의 적정성(20점)

※ 코로나 19 자체검사 가산점 적용

4) 발표 : 개별통보

□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○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매월 보조금 지급

○ 사업완료 시 15일 이내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원칙

□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가. 공고 및 신청서 서식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(<https://www.mentalhealth.or.kr>)

나. 신청서 접수기간 : '21.03.31.(수) ~ 04.09.(금)까지

※ 근무시간(09:00~18:00) 도착분에 한함

다. 제출서류 :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동의서

라. 신청서 접수장소 :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
(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별관 2층)

마. 신청서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택배접수

□ 유의사항

- 가.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.
- 다.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라. 신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급대응팀 한지원[031-212-0435(내선 6426)]으로 문의

□ 기타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.
-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도 또는 우리도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.
 - 월 실적보고서 및 최종운영보고서(익년 1월 15일 이내) 제출
-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름.